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19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18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19069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희진, 김봉균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김갑수

변론종결 2021. 11. 30.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7. 8. 접수 제60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B(이하, 채무자)은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보증기한 연장시에도
연대보증인으로 연장에 동의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잔액	최초 보증기한	연장 보증기한	채권은행
2018. 4. 26.	D	425,000,000	2019. 4. 26.	2020. 4. 24.	중소기업 은행
2018. 4. 26.	E	255,000,000	2019. 4. 26.	2020. 4. 24.	
2018. 4. 26.	F	170,000,000	2019. 4. 26.	2020. 4. 24.	
2018. 4. 26.	G	425,000,000	2019. 4. 26.	2020. 4. 24.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을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처분행위 등

(1) 채무자 B은 소외 회사의 창업자인 대표자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동파이프(동관)를 공급받아 에어컨, 냉장고 등 열교환기의 핀튜브로 가공한 후 에어컨 등 제조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그 외에 다른 사업부문은 없었고, 동관의 80% 이상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3.경부터 소외 회사에 동관을 공급하여, 대략 2015년 19억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56억 원, 2018년 79억 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매월 말까지 공급한 동관 대금을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받되, 공급량에 맞추어 대금을 결제받지는 않고 때로는 외상대금 잔액이 수억 원인 채로 거래하면서(2018. 9.말 대금 잔액 0원, 2018. 11.말 대금잔액 575,531,367원) 3-4개월 내에 전액이 결제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9. 12.말 결제대금을 연체하여, 이를 2019. 1월 중에 지급하였고, 2019. 1.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고는 2019. 2. 28. 동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그 외상대금이 12억 6천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채무자 B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동관을 공급할 수 없고, 결제되는 대금만큼만

공급하겠다고 통보하고, 2019.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현금이 입금되면 그에 해당하는 소량의 동관(1월 공급량 대비 5% 이하)만을 공급하였다.

채무자 B은 피고에게 미결제 대금을 분할 변제하고 담보도 제공할테니 동관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미지급 대금 중 절반 정도를 갚아야 물품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4) 채무자 B은 2019. 7. 4. 피고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 2019. 7.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7. 8. 접수 제60991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공동담보 부동산: 용인시 수지구 소재 H아파트(소외 I 소유), 수원시 장안구 소재 J 아파트(피고 소유)

(5) 피고는 2019. 6. 18.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450만 원을 입금하자 2019. 6. 28. 약 200만 원 상당, 2019. 7. 5. 약 260만 원 상당의 동관을 공급한 이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9. 8. 8. 3,000만 원, 2019. 9. 30. 2,640만 원의 대금을 변제하였으나(대금잔액 12억 1,700여만 원) 더 이상 동관을 공급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임의경매(이 법원 K)를 신청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 및 집행비용이 감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11. 20.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소외 회사는 2019. 10. 7.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보증사고발생통지를 받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2020. 4. 29.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1,282,607,566원(원금 1,275,000,000원, 이자 7,607,5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3, 14, 20,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도 2019. 4. 26. 무렵에 신용보증기금을 연장해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까지 소외 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잘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이 2018. 4. 26. 체결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9. 7. 8.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설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10.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9. 1.경부터 이미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3.경부터 주재료인 동관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미 사업이 거의 중단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인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대보증서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연대보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이란, 해석상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증인을 의미하고, 채무자 B는 '나.목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책임재산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7.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같은 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각 근저당권자 L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근저당권자 L은행의 2019. 7. 4. 및 2021. 4. 7. 기준 채무자 B에 대한 대출잔액은 2억 원,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잔액은 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9. 5. 기준 감정가는 273,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무잉여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포함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다. 채무초과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김해시청, 수원장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M기관,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일인 2019. 7. 4. 무렵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합계 925,551,000원 상당, 소극 재산은 6,422,877,000원 상당으로 채무자의 채무초과가 인정된다.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273,000,000원

수원시 장안구 소재 J아파트 N호 485,000,000원

경남 거창군 O 외 4필지 167,551,000원

[소극재산]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금 1,27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자 L은행 2억 원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자 P은행 329,000,000원

개인채무보증현황 합계 4,618,877,000원(2019. 1. 1.부터 2020. 11. 26. 현황)

다.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B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변제 자력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경 미지급대금이 12억 원을 초과하자 동관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우선 결제를 요구하였고, 채무자 B이 이를 해결하고자 분할변제를 약속하면서

2019. 7. 8.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변제하였음에도 이후에도 전혀 동관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저당권설정 직후인 2019. 8. 28.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추가 자금을 융통하였거나 추가로 동관을 공급받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 미지급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더하여 향후 자금을 확보되고, 미지급대금이 절반 이상 변제될 경우 동관을 공급받을 여지를 마련한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 중 1인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채무자 B이 사업 계속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수익자의 악의 여부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이었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피고로부터 80% 이상의 동관을 공급받아 재가공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인 소외 회사가 4개월 이상 동관을 거의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외상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혀 동관을 공급해주지 않았으며, 2개월 이내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문선주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등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27.210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상남도 김해시 대 17089.8㎡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7089.8분의 73.1842

